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규정

(제정 2003. 11.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경쟁력의 관건인 여성의 인력활용도를 제고하고 여성의 리더쉽·성취감 확대 및 여성편견 제거 등 대학교육의 양성 평등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 기본 운영계획 수립
2. 여학생 관련 프로그램 상시 개설·운영
3. 여학생을 위한 특화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4. 여학생을 위한 외부 직업세계와의 연계 강화
5. 취업정보, 여성 유망직종 정보 제공
6. 여성 동문회의 지역별, 분야별 DB 구축을 통한 졸업생과 여대생의 사이버멘토링 운영
7. 기타 센터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3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 교원으로 우선 보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대표로서 행정을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 ①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직원 및 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에 두는 상담원은 관련분야 실무 유경험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구성) 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3명 이상은 여성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진로취업지원실장이 된다. <개정 2019.9.1.>

제4장 재정

제11조(재정) ① 센터의 재정은 학교비, 국고지원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센터의 회계연도는 대학 회계연도와 같다.

제12조(세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